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01-2017-009563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

| 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접 수 |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 | 건 물 내 역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2017년7월10일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17 |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 1층 198.38㎡ 2층 169.91㎡ 3층 169.91㎡ 4층 106.7㎡ 5층 106.7㎡ 6층 77.04㎡ 옥탑1층 24.19㎡ | |
| 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 | | | | |
| 표시번호 | 소 재 지 번 | 지 목 | 면 적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1.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| 대 | 331㎡ | 2017년7월10일 등기 |

| 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표시번호 | 접 수 | 건 물 번 호 | 건 물 내 역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 1 | 2017년7월10일 | 제4층 제401호 | 철근콘크리트구조 45.35㎡ | |
| (대지권의 표시) | | | | |
| 표시번호 | 대지권종류 | 대지권비율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 |
| 1 | 1 소유권대지권 | 331분의 28.60 | 2017년7월2일 대지권 2017년7월10일 등기 | |
| 2 | | | 별도등기 있음 | |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

| 표시번호 | 대지권종류 | 대지권비율 |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|
| | | | 1토지(을구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) 2017년7월10일 등기 |
| 3 | | | 2번 별도등기 말소 2017년11월3일 등기 |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| 소유권보존 | 2017년7월10일 제127420호 | | 공유자 지분 2분의 1 권승익 730206-*****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, 107동 202호(구래동, 한가람마을 우미린) 지분 2분의 1 최은영 611001-***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, 420동 801호(당산동5가, 당산삼성래미안) |
| 2 |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 | 2018년7월23일 제136186호 | 2017년6월30일 매매 | 소유자 박혜진 891228-*****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, 401동 801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 |
| 3 | 가압류 | 2020년11월3일 제194995호 | 2020년11월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 결정(2020카단1 04307) | 청구금액 금3,046,000,000 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(서울서부관리센터) |
| 4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5년4월29일 제2028203호 | 2025년4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102 786) |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84371-0003123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(서울서부관리센터) |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

| 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 1 | 근저당권설정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| 2017년8월30일 추가설정계약 | 채권최고액 금1,200,000,000원 채무자 최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, 420동 801호 (당산동5가, 당산삼성래미안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 (당산역지점) 공동담보목록 제2017-1310호 |
| 2 |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| 2018년5월10일 해지 | |
| 3 | 주택임차권 | 2020년9월16일 제162678호 | 2020년8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0카임30275) | 임차보증금 금280,000,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8년6월16일 주민등록일자 2018년7월23일 점유개시일자 2018년7월23일 확정일자 2020년8월3일 임차권자 이강현 550728-*****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17, 401호(신대방동) |
| 3-1 | | | |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0년9월16일 부기 |
| 3-2 | 3번임차권경정 | 2020년11월13일 제201429호 | 2020년10월29일 결정경정(2020 카경31284) | 임대차계약일자 2018년6월22일 확정일자 2018년7월16일 |

【 공동담보목록 】

| 【 공동담보목록 】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록번호 | 2017-1310 | | | | |
| 일련번호 |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| 관할등기소명 | 순위번호 | 기 타 사 항 | |
| | | | | 생성원인 | 변경/소멸 |
| 1 | [토지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5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7년11월1일 제209258호 해지 |
| 2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2층 제201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3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2층 제202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8일 제85846호 해지 |
| 4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2층 제203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1월4일 제1835호 일부포기 |
| 5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2층 제204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6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3층 제301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7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3층 제302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7년11월1일 제209259호 일부포기 |
| 8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3층 제303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|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

| 일련번호 |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| 관할등기소명 | 순위번호 | 기 타 사 항 |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생성원인 | 변경/소멸 |
| | | | | 담보추가로 인하여 | 해지 |
| 9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3층 제304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10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11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2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12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5층 제501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13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5층 제502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8년5월10일 제88090호 해지 |
| 14 | [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6층 제601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| 1 | 2017년8월30일 제166815호 담보추가로 인하여 | 2017년11월24일 제224020호 일부포기 |

-- 이 하 여 백 --

열 램 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1-2017-009563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-55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| 등기명의인 | (주민)등록번호 | 최종지분 | 주 소 | 순위번호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|
| 박혜진 (소유자) | 891228-***** | 단독소유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,401동 801호(목동, 목동신시가지아파트) | 2 |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정보 | 주요등기사항 | 대상소유자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3 | 가압류 | 2020년11월3일 제194995호 | 청구금액 금3,046,000,000 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| 박혜진 |
| 4 | 강제경매개시결정 | 2025년4월29일 제2028203호 |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| 박혜진 |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| 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정보 | 주요등기사항 | 대상소유자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3 | 임차권설정 | 2020년9월16일 제162678호 | 임차보증금 금280,000,000원 임차권자 이강현 | 박혜진 |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